

6-나.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

6-나-(1)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(일반대학, 교육대학, 산업대학, 각종학교, 기술대학, 방송통신대학)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

【공시시기】 : 2023년 8월

【공시내용】 : 2023년 계열별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생 1인당 전임교원 확보율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3. 4. 1.)

기준연도	계열	학생 현황						전임교원 현황		교원 법정정원		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		전임교원 확보율	
		학부		대학원		계		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(B)	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(B')	계		학생정원 기준 (A/B)	재학생 기준 (A'/B')	학생정원 기준 (B/C×100)	재학생 기준 (B'/C'×100)
		학생정원	재학생	학생정원	재학생	학생정원 (A)	재학생 (A')			학생정원 기준 (C)	재학생 기준 (C')				
	인문·사회계열														
	자연과학계열														
	공학계열														
	예·체능계열														
	의학계열														
	합계														

■ 작성지침

【학생현황】 : 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과 재학생

【계열】 :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, 「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」에 따라 계열 구분

①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: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의 [별표 1]에 의해 분류



대계열	포함되는 소계열	비고
인문·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·체능계열 의학계열	어학·문학·사회 및 신학 등 이학·해양·농학·수산·간호·보건·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·미술·체육 및 무용 등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수의학 등	의예과·치의예과·한의예과·수의예과 등 예과는 자연과학계열에 포함

※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

② 기술대학: 「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」의 [별표 1]에 의해 분류

대계열	포함되는 소계열	비고
사회실무계열 자연·공학계열	경영·관광·유통·보험 및 실용예술 등 해양·농학·수산·이학 및 공학 등	

【학생정원】

① 대학, 교육대학, 산업대학, 방송통신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

구분	학생정원 산출공식		비고
편제가 완성된 대학	5개학년 편성교	2023~2019학년도 입학정원의 합(2019학년도는 5학년 입학정원)	
	4개학년 편성교	2023~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합	
신설 및 학제변경으로 인해 편제가 미완성된 대학	3개학년 편성교(2021년도 신설교)	2023학년도 입학정원 + 2022학년도 입학정원 + 2021학년도 입학정원	
	2개학년 편성교(2022년도 신설교)	2023학년도 입학정원 + 2022학년도 입학정원	
	1개학년 편성교(2023년도 신설교)	2023학년도 입학정원	
의예과, 의학과, 치의예과, 치의학과, 수의예과, 수의학과 등	의예과 1,2학년 정원	의예과 1학년, 2학년 정원: 자연과학계열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입력	
	의학과 1~4학년 정원	의학과 1학년~4학년 정원: 의학계열 2023~2020학년도에 입력	

② 대학원: 입학정원의 합을 의미하며,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입학정원을 근거로 대학원 학생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환산

구분		산출공식	비고
편제가 완성된 대학원	4학기제	일반대학원/특수대학원	(2023+2022학년도 입학정원)×1.5
		전문대학원/대학원대학	(2023+2022학년도 입학정원)×2
	5학기제	일반대학원/특수대학원	(2023+2022+2021학년도 입학정원의 1/2)×1.5
		전문대학원/대학원대학	(2023+2022+2021학년도 입학정원의 1/2)×2
	6학기제	일반대학원/특수대학원	(2023+2022+2021학년도 입학정원)×1.5
		전문대학원/대학원대학	(2023+2022+2021학년도 입학정원)×2
	8학기제	일반대학원/특수대학원	(2023+2022+2021+2020학년도 입학정원)×1.5
		전문대학원/대학원대학	(2023+2022+2021+2020학년도 입학정원)×2

구분		산출공식		비고
편제가 미완성된 대학원	1~2학기 (1차연도)	일반대학원/특수대학원	(2023학년도 입학정원)×1.5	
		전문대학원/대학원대학	(2023학년도 입학정원)×2	
	3~4학기 (2차연도)	일반대학원/특수대학원	(2023+2022학년도 입학정원)×1.5	
		전문대학원/대학원대학	(2023+2022학년도 입학정원)×2	
	5~6학기 (3차연도)	일반대학원/특수대학원	(2023+2022+2021학년도 입학정원)×1.5	
		전문대학원/대학원대학	(2023+2022+2021학년도 입학정원)×2	

※ 학생정원 산출 공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정원이 500명(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)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(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)으로 산정

- ③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 환산 방법
- 총정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

$$\text{계열별 환산정원} = (500\text{명} - \text{총정원}) \times \frac{\text{계열별 학생정원}}{\text{총정원}} + \text{계열별 학생정원}$$

-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

$$\text{계열별 환산정원} = (200\text{명} - \text{총정원}) \times \frac{\text{계열별 학생정원}}{\text{총정원}} + \text{계열별 학생정원}$$

<대학>

- ※ 학생정원 산정 시, '결손인원' 또는 '편입학여석' 활용을 통한 '첨단학과 증원 인원'(총 정원범위 내 자체조정, 또는 국립대 증원을 통한 첨단학과 정원 증원분은 입학정원에 포함) 및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에 따른 '모집유보 인원'은 제외하여 산출
- ※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/편입학여석 활용분
 - 결손인원 활용 방식: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위해 활용한 결손인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
 - 편입학 여석 활용 방식: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증원한 첨단학과 정원
- * 결손인원 활용과 편입학 여석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, 결손인원 활용분과 편입학 여석 활용분을 합산

<대학원>

- ※ 학생정원 산정 시, '결손인원' 활용을 통한 '첨단학과 증원 인원' 및 「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」에 따른 '모집유보 인원'은 제외하여 산출
- ※ 제외해야 하는 첨단학과 결손인원
 - 타 학과 정원 감축형: 첨단학과 정원에서 타 학과 누적 감축정원을 뺀 값(즉, 미감축 정원)
 - 타 학과 정원 유지형: 첨단학과 정원
- * 타 학과 정원 감축형과 유지형이 혼재하는 경우, 각각의 활용분을 합산



【재학생】 : 2023. 4. 1. 현재 재학 중인 자(단,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 수 제외, 원격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)

- ① 대학: 2023. 4. 1.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수
- ② 대학원: 2023. 4. 1. 현재 재학생 수를 대학원 종류에 따라 아래 산출 공식에 따라 환산 인원 산출

<대학원 재학생 환산 인원 공식>

- ㉠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, 계절제 교육대학원: $(A+B+D+E) \times 1.5 + (C/2) \times 1.5$
- ㉡ 전문대학원, 대학원대학: $(A+B+D+E) \times 2.0 + (C/2) \times 2.0$

○ 일반대학원/특수대학원/계절제 교육대학원의 경우

구분	수업연한별 재학생 수					공식	재학생 환산 인원 계 $(A+B+D+E) \times 1.5 + (C/2) \times 1.5$	
	2년(4학기)(A)	2.5년(5학기)		3년(6학기)(D)	4년(8학기)(E)			계(F)
		올해+전년도 입학자(B)	제작년 이전 입학자(C)					
석사과정						1.5		
박사과정						1.5		
석/박사통합과정						1.5		
소계								

○ 전문대학원, 대학원대학의 경우

구분	수업연한별 재학생 수					공식	재학생 환산 인원 계 $(A+B+D+E) \times 2.0 + (C/2) \times 2.0$	
	2년(4학기)(A)	2.5년(5학기)		3년(6학기)(D)	4년(8학기)(E)			계(F)
		올해+전년도 입학자(B)	제작년 이전 입학자(C)					
석사과정						2.0		
박사과정						2.0		
석/박사통합과정						2.0		
소계								

【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】 :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「교육공무원법」 또는 「사립학교법」에 의하여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
- ①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교원
- ② 2023. 4. 1. 현재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, 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」 제2조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
- ③ 국·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,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·수당 등을 지급 받는

교원

- ④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,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교육 등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/강의전담교수, 연구전담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연구소 소속 교원(인문한국사업: HK, 중점연구소사업 등)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
 - ※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
- 국·공립대 기금교수는 대학의 「기금교수운영규정」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
 - 「교육공무원법」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급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사학연급에 가입된 교원
 -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(최소 조교수 수준) 전일제(full-time) 근무 계약교원
- HK교수
 - 국·공립대는 「HK교수 운영규정」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
 -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
-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(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제2항)
 - 국·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
 -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
 - ※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자는 비록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 불가

전임교원 인정 제외대상
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②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또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③ 학교교육·지도, 학문연구 및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지 않는 교원 ④ 학과(부)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,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

※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경우(아래의 사유 외에 기타 청원에 의한 휴직은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됨)

- ①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(휴직)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
- ②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
- ③ 고용휴직(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음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9조의2 참고)

※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

※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(6-가-1. 전체 교원대비 전임교원 현황의 기타(소속학과없음)에 입력된 교원)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의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됨

【재학생 기준 전임교원】 :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에서 안식년/연구년제 교원(국립·공립·사립), 파견 교원(국립·공립) 중 전임교원 조건 미충족자를 제외한 교원 수



참고

<교원확보율 및 교원1인당 학생 수(재학생 기준)에서 제외되는 전임교원>

구분	설립구분	관련 규정	제외 교원
안식년/연구년제	국립·공립·사립	연구의무 부과,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,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, 지정제한 등	안식년/연구년제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안식년/연구년제 교원
파견	국립·공립	안식년/연구년제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 부여 및 이와 연계한 지정제한 등	파견규정 근거 및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파견교원

<안식년/연구년 교원(국립·공립·사립) 및 파견교원(국립·공립) 전임교원 인정 조건>

1) 안식년/연구년 교원(국립·공립·사립)

- 학칙 또는 규정에 안식년/연구년 근거를 명확히 하고
- 연구의무 부과, 선발요건 및 인원제한, 종료 후 의무복무 근거 마련, 지정제한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

안식년/연구년 관련 규정 예시(안)

- ▶ (의무사항) 1)종료 후 연구보고서 제출, 2)안식년·연구년 기간 ○○배 의무복무
- ▶ (선발요건) 재직기간 ○○년 이상인 자
- ▶ (선발인원) 안식년·연구년 및 파견 포함 전체 교수의 ○○% 이내
- ▶ (지정제한) 최근 ○○년 이내 안식년·연구년, 최대 ○○회, 통산 ○○년 등

2) 파견교원(국립·공립)

- 학칙 또는 규정에 파견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
-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 파견교원에게는 안식년/연구년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, 안식년/연구년과 연계한 지정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전임교원에 포함
- ※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: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

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7호 파견 관련 규정 예시(안)

- ▶ (지정제한) 최근 ○○년 이내 안식년/연구년/파견인 경우 제한
- ▶ (기타 선발요건·인원·의무사항) 안식년/연구년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

【교원 법정정원】

○ 대학, 교육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: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6조제1항 [별표 5]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(학생정원, 재학생별)하되,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(예: 환산인원이 5.2명일 경우 6명)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

대계열	인문·사회	자연과학	공학	예·체능	의학
교원 1인당 학생 수	25	20	20	20	8

- 기술대학: 「기술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9조제1항 [별표 4]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(학생정원, 재학생별)하되,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(예: 환산인원이 5.2명일 경우 6명) 교원 법정정원을 산출

대계열	사회실무	자연·공학
교원 1인당 학생 수	25	20

【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-학생정원 기준】 : (학생정원/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),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

【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-재학생 기준】 : (재학생/재학생 기준 전임교원),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

【전임교원확보율-학생정원 기준】 : (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/학생정원 기준 교원 법정정원×100),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

【전임교원확보율-재학생 기준】 : (재학생 기준 전임교원/재학생 기준 교원 법정정원×100),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

■ 참고사항

-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육기본통계조사(한국교육개발원, 2023. 4. 1. 기준)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
-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